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21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5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와의 상충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1조 ~ 제2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3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감사,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를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인권침해”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권침해”로 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대비 비교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p> <p>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p> <p>3.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삭제></p>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신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5. (현행과 같음)

6.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감사,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등-----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6. <삭제>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다
음 각 호의 -----

----- .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10호 이외의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 9. (개정안과 같음)

10.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제2조제4호 중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10호 이외의 사항
-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직한 자”를 “재직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경력자”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청원법」 제5조”를 “「청원법」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5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5. (현행과 같음)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

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

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생략)

③ (생략)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 7. (생략)

8. 「청원법」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③ (생략)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 5. (생략)

----- 사람

4. -----

----- 사람

5. -----

- 사람으로 -----

----- 있는 사람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청원법」 제5조-----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8. (생략)

③ (생략)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 · ② (생략)

③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위원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이나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음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시민참여음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생략)

⑤ 시민참여음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7.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7조-----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제27조(시민참여음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⑦ (생략)

----- . <단서 삭제>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⑧·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
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⑨ -----

제8항-----

-----.